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종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01

발의년월일 : 2016. 10.

발 의 자 : 신종갑, 강희향,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서종수, 전승학

1. 제안이유

2015. 11. 21. 시행 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6조)

마.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업무·역할,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관계법규

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다. 「평생교육법」 제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2016. 10. 19. ~ 10. 24.(제출된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6. 법 제30조 및 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8.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

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항을 보고 받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시설·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 제6조(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활동보조서비스 구비 추가지원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소계(b)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총 비용(a-b)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합계
의존 재원	소계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구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합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출은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고명성
연 락 처	02-3153-888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예산과목) \ 연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합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참고	공모 선정을 통한 시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중 (시비90%,구비 10%) 자치구 부담비율 10%이상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구 추가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구비 추가지원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참고	발달장애인(1급 및 2급, 성인기) 활동보조 30시간 구비 추가지원					
□ 총 비용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관 계 법 령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21.]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78호, 2016.2.3., 타법개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60호, 2016.5.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